

의안번호	2211761
의 퇴 인	이재강의원
회 답 일	2025.8.19.
추계번호	25D4008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2제1항 (재난관리 지원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)	북한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위한 지원	재량규정
2	안 제10조의2제2항 (재난관리 지원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)	재난관리를 위한 남한과 북한간 공동대응 체계 구축	의무규정
3	안 제12조의2제1항 (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)	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	재량규정
4	제13조제3항제3의2 (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)	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추가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의2제1항 (재난관리 지원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)	미대상: 2025년 예산 기준 북한에 대한 구호지원 사업에 1,122억 3,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
2	안 제10조의2제2항 (재난관리 지원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12조의2제1항 (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)	
4	제13조제3항제3의2 (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)	미대상: 현재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음

2. 상세 사유

- 재난관리를 위한 남한과 북한간 공동대응 체계 구축(안 제10조의2제2항)
 - 2025년 기준 통일부는 남북한 공유하천에 대한 홍수예보체계 구축 및 조림·사방사업, 한강하구 공동조사·이용 등 사업 수행을 위해 97억 1,400만 원을 편성함
 - － 남북공동조사 사업설계 22억원, 홍수예보시설 설치 10억원, 황폐지 산림복구비 3억원, 부대경비(가설 건물비, 운반비 등) 4,000만원, 한강하구 공동조사 46억 7,400만원, 한강하구 공동이용 15억원 편성
 - 개정안에 따라 남북한 간 공동대응 체계 구축 대상이 되는 재난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재난대응체계의 규모,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추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-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
 - 2025년 기준 통일부는 인도적문제 해결, 인권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 10억 7,700만 원을 편성함
 - 개정안에 따라 지원 대상 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지원대상, 지원방법, 규모 등에 대하여 추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